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변 호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및 재계약)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재계약) 시설 현황

구 분	1호점	2호점
시 설 명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소 재 지	성북구 아리랑로4길 22, 3층	성북구 오패산로 4, 1층
종사자수	3명	2명
관할지역	성북동 ~ 길음동	종암동 ~ 석관동
위탁기간	2021. 4. 7. ~ 2024. 4. 6.	2021. 4. 7. ~ 2024. 4. 6.

○ 2021. 4. 1.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수탁 협약

○ 2023.11. 2.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재계약 의사 표명

나. 위탁기간 : 2024. 4. 7. ~ 2027. 4. 6. (3년)

다.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심의·의결을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함.
- 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시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 법인 적격 심사하여 재위탁 선정(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